

정보공개 및 공시 대응을 위한 대학의 설명책임 메커니즘 고도화

Enhancement of Universities'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Disclosure

임진희(Jin-Hee Yim)*

우수영(Su-Young Woo)**

초 록

2008년 12월 1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학은 다중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공시의 의무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공개 의무를 갖고 있어 이러한 설명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를 포함하여 향후 증대될 설명책임 실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위해 설명책임의 역할 책임 명시화, 정보공개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On Dec 1, 2008,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education relevant institutes, the educational information of each university is opened at their homepages and at portal web sites. Every university, thus, is in the moment to set up strategies to consistently respond to following information disclosure as well as the one already disclosed. The strategy should contain the assurance of the basic accountability mechanism of the university. On the occas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university information, the present study has a purpose to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university accountability and to suggest a mechanism, which is necessary for effectively and efficiently executing the increasing accountability practices in disclosing and announcing the information. To meet the purpose, this study introduces how to redesign university jobs as practices focused on evidence information for the accountability and also suggests solutions how to improve the mechanism for the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which include clarify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ccountability jobs, revising the proces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building the information systems for an accountability.

키워드: 대학정보공시, 정보공개, 설명책임성, 증거정보, 업무재설계
information disclosure of university, freedom of information, accountability, evidence information, business process redesign

*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yimjhkr@empa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디지털 아카이빙연구소 선임연구원(anan091@hanmail.net)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2009년 2월 18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2월 25일
■ 정보관리학회지, 26(1): 107-124, 2009. [DOI:10.3743/KOSIM.2009.26.1.107]

1. 머리말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07년 4월 국회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들이 2008년 12월 1일 처음으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사이트를 통해 교육정보를 공시하게 되었다. 특례법은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전제로 한 특례법으로 정보공개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법의 목적-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공유한다. 또한, 특례법은 학술 및 정책 연구의 진흥,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후남은 특례법이 ‘공개’의 개념과 ‘공시’의 개념을 구분²⁾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 법이 교육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면서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임후남 2008a). 즉, 특례법 제정의 취지는 적극적 방법에 의해 교육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교육정보공시제도의 시행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정보공시제는 초·중등학교 대상의 ‘학교정보’와 고등교육기관 대상의 ‘대학정보’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하여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운영에 구성원의 민주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임후남 2008b).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하는 바는 가볍지 않다.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 이해당사자로서 대학과 연관된 슬한 꿈과 희망, 좌절과 패배를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대학은 다수 국민 대중의 관심 대상이며 이를 반증하듯 본격적으로 대학정보공시가 시작된 이후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예견됐던 공시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임후남 2008a; 임후남 2008b). 대학정보공시제에 관련된 주체들³⁾ 입장에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시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대학의 입장에서는 공시정보 대부분이 비록 이미 여러 관련 기관에 제출하던 정보라 해도, 이제는 하나의 통합시스템에 모든 대학의 공시정보가 모아져 비교분석이 가능해졌으므로 공시정보 제공서비스의 결과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시로 인해 대학의 이해당사자들이 대학의 경영과 운영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관심을 갖게 될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된다.
 2) 특례법에 따르면 ‘공시’는 청구와 관계없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이다.
 3) 대학공시제 추진체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총괄관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 항목별관리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대학들이 포함된다.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6쪽 참조.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정보공시제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특례법의 대상 기관에 국공립대학 뿐만 아니라 일반사립대학이 모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보공개법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범주에 사립대학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사립대학 모두가 일반 국민대중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시켜준다.

결과적으로 특례법 시행으로 대학들은 이제 대학정보공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 글은 대학정보공시제를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를 포함하여 향후 증대될 설명책임실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대학이 현안으로 다가온 대학정보공시와 근시일 내에 예견되는 정보공개청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1.2 선행연구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연구는 특례법 제정 이전과 제정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 제정

이전에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재윤은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과 관련 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박재윤 2005). 법 제정 이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지침 시안과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방안을 개발하였고(한국교육개발원 2007), 특례법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으며(허종렬 2008), 영국 등 해외의 유사한 사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최봉섭 2008).

정보공개와 공시의 적극적인 의미를 주장한 연구로써 조전혁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단위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가급적 모든 교육정보를 공개하고, 특정한 교육정보를 학생·학부모가 알고자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해당정보를 생산해서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조전혁 2008), 고희일은 대학의 정보공개에 기초한 대학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고형일 2007).

수요자관점에서 보는 공시정보의 역할에 대해 박현정은 초·중등 학교와 같은 의무교육기관의 경우는 정보공개와 공시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과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 지원된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설명책임성⁴⁾을 제고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정보공개와 공시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

4) 인용한 글의 저자는 Accountability를 '책임성'이라 표현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설명책임성'이라 바꿔 표현하였다. 이후 동일하게 설명책임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현정 2008). 또한, 임후남은 대학공시의 경우 학부모, 교육 및 학교행정가,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기관, 졸업생을 채용할 기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공시정보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일관되며 통일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데이터는 맥락과 함께 관련지어질 때 의미있는 정보가 되고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의 산출 및 성과 정보의 공시 방법에 대해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임후남 2008a).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제화와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에 치중해 있으며 대학정보공시제의 경우 중요한 수행주체인 대학의 입장에서 공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공시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여 수요자에게 공개하는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제의 근본적 효용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한편으로는 대학기관 스스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대학이 정보공개 및 공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대학이 처한 설명책임 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 현황을 살펴본다.

2. 대학의 설명책임 구조와 정보공개 및 공시 현황

2.1 대학의 설명책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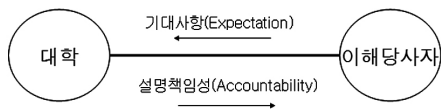
설명책임이란 개인이나 기관이 권한을 위임 받은 행위의 실행에 대하여 답변해야 하는 관계를 말하며, 설명책임에는 항상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 행위주체와 그에 대해 심판을 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상대주체가 연관된다(Meijer 2001). “개인 또는 기관이 위임받은 활동의 성과에 대해 대답하도록 요구되는 관계”(Romzek 1987; Romzek 2000)를 의미하는 설명책임성은 “A가 B에게 A가 했던 과거나 미래의 행위와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정당화하며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강제될 때 A는 B에게 설명책임이 있다고 한다”(Schedler 1999). 어떤 대상에게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거나 방어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 설명책임성이며, 그것 자체가 보상이나 제재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설명책임의 조건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가 달라진다(Frink 2004).

설명책임에 대한 기본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설명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따라서 설명책임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이며 모든 설명책임성은 연관된 정보가 적시에 가용하도록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특정 정보가 관심 대상 이슈를 조정하거나 성과를 보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Cameron 2004).

설명책임성 확보를 통해 조직은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투명경영 및 책임경영을 통해 의사소통이 확대되는 편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설명책임성이란 개인, 조직 또는 시스템에 책임이 부여된 활동의 결정에 대하여 주로 기록을 통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풀이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설명책임성 개념은 몇 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 둘째,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셋째,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나 실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하는 것. 넷째, 시정조치를 인정해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이다(Cameron 2004).

이상의 설명책임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정의를 토대로 대학이라는 조직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집단과 답변할 의무가 있는 대학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대학의 설명책임 개념 구조

우리나라의 대학 조직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대한 설명책임을 갖고 있으며, 전례없이 설명책임성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임후남 2008b). 대학정보공시는 이러한 대학에 대한 설명책임성 압력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기대

사항은 대학정보공시에 의해 보장되는 요구에서 부터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설명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이 부담하게 될 제재와 불이익의 유형 또한 다양할 것이다. 대학은 이해당사자 집단별 기대사항을 식별한 후 어느 범위, 어느 수준까지를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국내 대학의 정보공개 현황

2007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생 및 학부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1%가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대학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수도권 소재 69개 대학에 2006~2007년도 예산 세부 내역, 최근 3년간 적립금·재단 전입금 현황, 등록금 책정 논의기구 유무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상당수 대학들은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으며, 심지어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조차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인터넷한겨레 2008). 한편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첫 날 세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 중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코너와 정보공개목록을 비치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이들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거나 교과부 등의 통합사이트를 거쳐야만 가능한 상태였다(세계일보 2008).

이처럼 대학의 이해당사자들은 대학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며, 각

대학들은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국민 대중의 정보공개 관심이 정부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이다. 그 결과 각 대학 구성원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대학에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대학이 대학정보공시 체계로 공시정보 이외에 더 세밀한 대학정보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공개청구가 촉발될 것이며 이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임을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구조 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3 대학의 정보공시 항목 분석

대학의 정보공시 항목은 총 13개 분야의 55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었던 항목(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각 대학의 기본적인 정보이며 이미 대학들이 대부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으로 주목을 끌 만한 대상은 아니다.

대학정보공시 항목 중에 대학들이 내부 정보

로만 가지고 있고 공개하지 않았던 항목으로 국민 대중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것으로는 학생 현황, 교원 현황, 재무회계 현황 등이 있다. 학생 현황으로는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이 눈에 띈다. 졸업생 현황, 졸업생의 진학 현황, 졸업생의 취업 현황 등을 조사하여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정보의 경우는 정규직 여부, 대기업 여부, 연봉 등 취업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을 모아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 할 수 있다. 교원 현황의 경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확보 현황, 전임교원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대학의 유사 학과 간에 교원 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이 곧바로 비교될 수 있어 좋은 신입생들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경쟁에 하나의 기준점을 명시화해줄 전망이다. 대학의 재무회계 현황은 이미 회계감사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긴 하나 등록금과 기부금, 발전기금 등의 현황을 보고하게 되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 전입금의 정확한 금액과 활용처를 두고 투명한 대학운영에 대한 요구가 촉발될 개연성을 갖는 민감한 정보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새로이 공시되는 항목에는 각 대학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내용과 조치결과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졸업생 취업 현황, 전임교원 현황, 등록금 현황, 기부금 현황 등은 12월 1일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공시된 이후에 즉각적으로 각 대학별로 통계되어 순위가 매겨지는 등 국민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대학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올려 학교 순위가 잘못 매겨지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공시 정보

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대학들이 공시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 정보를 고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할 개연성을 거론하는 등 공시 정보에 대한 품질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 품질에 대한 의구심은 앞으로 대학정보공시제가 정착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해소해야할 과제 중 하나이다.

2.4 시사점

대학의 설명책임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이 이해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의 업무행위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이 대학 설명책임성의 기본이다. 이 때, 설명책임을 위해 전달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이해당사자들이 대학의 업무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통해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당사자의 기대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업무를 신설하여 수행해야할 수도 있고, 업무는 하되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고 있었다면 정확하고 충분하게 기록화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 설명책임성의 점검 및 제고체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한 기제(임후남 2008b)”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기대사항에 대해 설명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정해진 항목과 관련된 대학정보공시제만으로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광의의 정보공개⁵⁾(하미승 1996)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만 한

다. 연구에 따르면, 수요자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학정보공시 항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는 부정적인 견해가 16% 이상이었다(임후남 2008b). 이는 의무적인 정보공개만으로는 대학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확대된 정보의 공개요구가 필연적임을 시사한다. 대학은 법제화된 협의의 정보공개로서의 대학정보공시에 반응적으로(reactive) 대응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곳에 적절한 형태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예측적인(proactive) 대응으로 효과적인 설명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다른 대학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적극적 설명책임성을 구현하는 대학의 존재는 그 자체가 나머지 대학들에겐 새로운 설명책임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교우위에 따른 상대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대학정보는 무엇일까, 대학은 그것을 어떻게 도출해내고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대학들이 고민하여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3. 증거정보 중심의 대학업무 재설계

많은 연구자들이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 목표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는 기록이라는 증거정보의 제공을

5) 하미승에 따르면, 정보공개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1) 국민 개개인의 청구에 의한 의무적인 정보공개 (2) 각종 법령에 의한 일방적 공표행위 (3) 행정기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포함한다. 여기서 (1)(2)는 공개제도를 (3)은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의미한다.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eijer는 설명 책임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정보 단계의 목표는 진상조사(Fact-finding)이며, 이 단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를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이 핵심적인 관심사가 된다고 보았다(Meijer 2003). IRMT는 “오늘날(공공기관들이 직면한) 도전 중의 하나는 종이나 전자적 형태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와 정보로부터 업무트랜잭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포착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여, 전체 업무 정보 가운데 중요한 증거정보를 선별하여 포착하는 것이 포괄성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IRMT, 1999). Nathan도 공공설명책임성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설명책임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로서 제출가능성이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Nathan 2007)”고 주장한다. 이것은 업무행위에 관한 설명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 관리되는 정보 범위의 특징으로서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earman은 “단순히 데이터가 처리된 정보로는 설명책임성과 증거를 위해 불충분하며 기록화(recordness) 혹은 증거성(evidentiality)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며 맥락정보의 포괄적 포착을 강조한다(Bearma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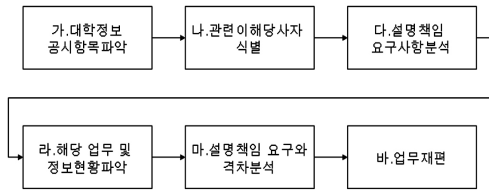
대학이 대학정보공시제 실시로 인해 확대될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설명책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대학의 주요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대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집행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록하면서 실무를 진행함으로써 효과

적인 설명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업무별로 절차를 정의하고, 각 절차 중 향후 설명책임으로 제시되어야 할 정보나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정하여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증거를 무엇이라 볼 것이며 증거는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실무의 특성을 기반으로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대학이 정보공개와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업무를 재설계해가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고 재설계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업무재설계 절차와 방법

이 글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증대될 정보공개 청구 등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학의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의 시발점인 대학의 공시정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각 대학은 대학정보공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당사자의 기대사항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법령에 의해 대학의 이해당사자들은 대학의 각종 정보를 공시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를 정확히 해석해 내는 일이 정보공개와 설명책임에 대응하는 출발점이 된다. 다음으로 현재의 업무가 충분히 증거정보를 남기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업무를 재편해야 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정보공개 및 공시 대응을 위한 업무재설계 절차

3.2 업무재설계 사례

대학정보공시와 그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를 주축으로 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업무를 재설계해 나갈 것인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학정보공시 항목 중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라는 정보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⁶⁾

가. 대학정보공시항목 파악

대학은 각 정보공시 항목에 대해 어떤 이해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항목별 공시의 취지와 근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공시 항목의 취지 및 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이 반영되도록 학생을 선발하였는지 전형별 입학생 통계 공개 • 근거: 고등교육법(52조, 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27조, 28조, 29조, 31조, 32조, 33조, 34조, 40조) |

다음으로는 각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입력할 때 현재 어느 정도 상세수준의 정보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이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포착해야 할 증거정보의 가장 상세한 수준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되는 항목 중 집계성(aggregated) 정보는 그 근거가 되는 상세 데이터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나. 관련이해당사자 식별

공시항목과 이해가 겹쳐있거나 업무적 연관이 있는 집단을 모두 찾아 나열해 본다. 복수의 이해당사자 집단이 있는 경우, 각 집단별 기대사항의 수준과 제재가능성에 따라 대학의 대응 우선순위를 서열화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이해당사자 집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 수험생 및 학부모 • 각종 특별전형 지원자 • 소외계층 수험생 및 학부모 • 교육 관련 청소년 시민단체 • 대학 교직원 |

이해당사자 집단은 크게 대학 외부와 내부의 이해당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의 범위는 정보공개 및 공시를 다루므로 외부의 이해당사자 집단의 요구에 대한 설명책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를 설계하는 것은 외부에 정보 제공을 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업무담당자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업무 생산성과 효

6) 3.2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필자들이 각각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던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른 대학의 업무 및 정보관리 컨설팅 자료 개발”(2008. 10 네모소프트(주)발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수행) 연구결과를 일부 발췌 응용한 것이다.

울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분석 대상에 대학 내부 집단도 포함되어야 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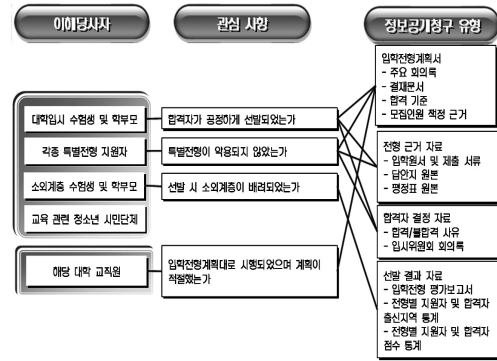
다. 설명책임 요구사항 분석

이해당사자들 마다 대학에 요구하는 설명책임의 내용과 관점이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음은 이해당사자 집단을 가정하여 작성해본 정보공개청구요구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작업은 대학의 업무담당자들이 그동안의 정보공개 청구 경험이나 언론의 관심사 등을 근거로 브레인스토밍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해낼 수 있다.⁸⁾

| 특수학교 교사 C씨 |
|--|
| <p>특수학교의 교사 C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지체장애 학생의 진학상담을 하며 학생의 거주지에서 통학이 가능한 대학을 추천해주고 싶으나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 설치 학교나 모집인원이 적어 이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못찾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집정원 외에 따로 정원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요강을 살펴보니 총모집인원에 비하여 약 1% 내외에 불과하다. C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없는 대학교에 왜 학생선발을 하지 않는지, 선발하는 학교의 경우 정원 산출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형계획 결정 근거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p> |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동안 분석한 이해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괄하여 관심사항으로 정리하고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정의한다. 이 정보는 한편으로는 대학이 적극적 정보공개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라. 해당 업무 및 정보현황 파악

다음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을 현재의 업무와 정보가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공시항목과 정보공개청구 예상 항목의 관련 업무를 찾아 현황을 살펴본다. 이 때, 대학이 갖고 있는 업무편람 혹은 기록물분류기준표 상의 단위업무를 참조하여 기준업무를 정의할 수 있다.

| 관련 업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계획수립 • 입시관리 • 입학전형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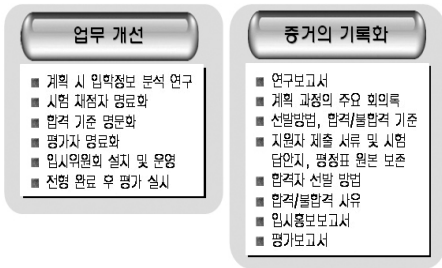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에 관련된 단위업무는 입학전형계획수립, 입시관리, 입학전형평가 등인 것으로 파악된다. 각 업무담당자에게 현행 업무의 절차와 업무과정에서 입출력되는 정보의 유형을 조사하여 현재 어떤 증거정보가

7) 설명책임성은 조직 내부의 계층간에도 적용되며 부서간에도 적용된다. 업무담당자로서 상사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전문성을 보이고 법규와 윤리를 준수할 설명책임을 갖는다.
 8) 객체지향방법론에 익숙한 조직이라면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유즈케이스(Usecase Diagram)와 시나리오(Scenario) 작성법을 이용하여 나.와 다.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기록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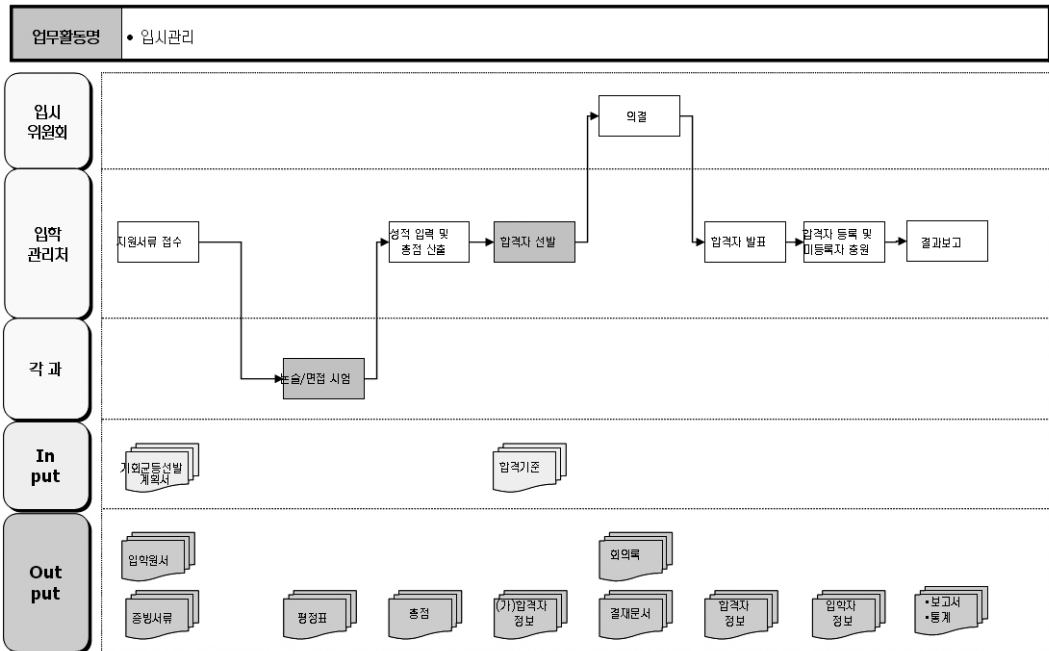
마. 설명책임 요구와 격차분석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현재의 업무 및 정보 간에 격차가 나는 부분을 분석하여 업무개선점과 기록화해야 할 증거정보를 도출한다. 각 업무별로 최종적으로 생성하여 관리할 증거정보를 전체집합으로 두고 대학은 자발적 공개 대상 정보를 선별한다.



바. 업무재편

격차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림 3>과 같이 대학의 업무를 재설계한다. 먼저 업무활동의 개선된 프로세스맵을 작성하고, 각 과정에서의 입력자료와 출력자료를 표시함으로써 기록화할 증거정보를 명시한다. 프로세스 상에 추가된 업무나 정보, 이전과 다르게 진행하게 되는 업무나 보장되는 정보는 별도로 표시하고, 업무활동사전과 증거정보사전을 작성하여 상세한 기술을 해두어야 한다. 이 때 입력과 출력 자료의 이름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고 그룹웨어, 전자결재, ERP, 학사지원관리 등 관련 시스템명도 다를 것이다.



<그림 3> 업무프로세스

4. 대학의 설명책임 메커니즘 개선 방향

대학이 정보공개와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업무를 재설계 하고 그 대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대학의 설명책임성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전사적 관점에서 설명책임 메커니즘 정비를 해야 업무재설계의 결과가 효과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대학이 설명책임을 고도화하는 전략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설명책임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정보공개 및 공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설명책임의 역할과 책임 명시화

대학정보공시는 일회성이 아니며 시간을 두고 공시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차츰 사회적 과정이 예상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공개 및 공시 제도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대학은 설명책임관리자,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 공시를 담당하고 있는 항목별 담당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있는 정보공개 담당자, 대학 내 정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학정보 관리자 등에게 각각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이들이 유기적이고 협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공개 및 공시에 대응하도록 해야한다. 이

를 위해 첫째, 대학에 설명책임관리자(CAO, Chief Accountability Officer)를 지정하여 정보공개 및 공시뿐만 아니라 각종 감사, 사회적 책임, 대학평가 등 대학의 설명책임에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부서 업무담당자에게는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공공정보로써 중요한 대학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각자의 업무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셋째, 공시나 정보공개담당자 등 직접적인 설명책임 담당자들에게는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와 적절한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정보관리자들은 업무의 증거정보가 신뢰성 있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는 기록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등 업무수행의 전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기록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⁹⁾ 대학기록관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에도 규정 미비, 전문 인력 부족, 시설 및 공간 부족, 예산 부족,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기록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김옥선 2007), 대학 정보관리체계에서 도서관이나 박물관과의 역할 정립이 명확치 않다(노은정 2002). 이러한 대학의 기록관리 현실은 대학이 정보공개와 공시에 효과적·

9) 대학정보공시와 관련하여 현황조사를 했던 서울 시내 두 대학의 경우 기록이 업무과정의 일부로 제대로 생산되어 있지 않았고,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캐비닛에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았고, 기록의 공개/비공개 설정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록의 공개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정보 제공 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서혜란 2005), 특히 설명책임 정보의 관리와 제공에 대한 협력체계의 정립이 시급하다.

4.2 정보공개 및 공시 프로세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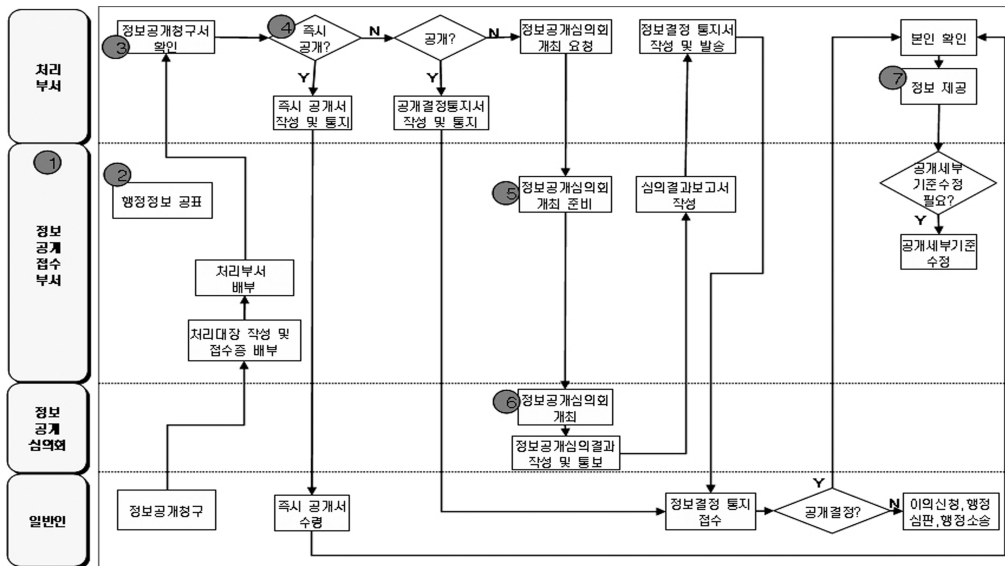
대학이 광의의 정보공개와 공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먼저, 대학 구성원들이 정보공개와 취지와 책무를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업무의 각 과정을 효율화시켜 가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를 위한 전담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보공개접수를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대학의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

리 및 보존하는 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 이외에 정보공개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업무기능에 따른 정보분류체계와 연계하여 행정정보공표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기준을 수립할 때에는 포함될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소재파악이 용이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파악이 용이해야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된 업무정보가 누락 없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학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이해당



〈그림 4〉 대학의 정보공개 프로세스

사자와 모든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이 작성되어 비치되어야 한다. 이는 전사적 정보맵을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해진다.

넷째, 구체적인 공개세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정보의 즉시공개 및 공개/비공개/부분공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각각의 정보 건에 대해 공개/비공개/부분공개가 책정되어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정보 공개를 집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내실 있는 정보공개심의를 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를 대비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법적 요건에 맞게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여섯째, 정보공개심의회가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만이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심의 결과 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의 조항 및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일곱째, 정보공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의 성격상 현저히 곤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열람의 경우 특히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이 열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사본 및 복제물 교부의 경우 사본 및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대학의 정보공시는 공시 업무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여러 항목관리기관에 제출하던 각 분야별 통계조사업무에 일부 항목이 추가되는 업무이므로 프로세스 개선보다는 최종적인 정보에 대한 정보 품질 확보 방안이 중요시된다. 공시 업무가 각 부서 항목별 담당자의 업무담당자의 정보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전체 공시담당자가 취합된 정보를 대학차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와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출 정보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정보의 생성 시점부터 정보에 대한 진본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정보의 현행화를 실시하고, 부서간의 정보 통합을 위해서 원활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대학들은 학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연구관리시스템 등 많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대학의 정보화 환경은 대학 정보의 공개 및 공시 업무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지 않다. 대학정보공시제 주관 당국에서는 대학이 공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데이터베이스와 개별 공시사이트 개발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정보 공시를 위한 통합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중계 역할을 하고 홈페이지 공시를 편리하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대학이 공시를 포함한 폭넓은 설명책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 설명책임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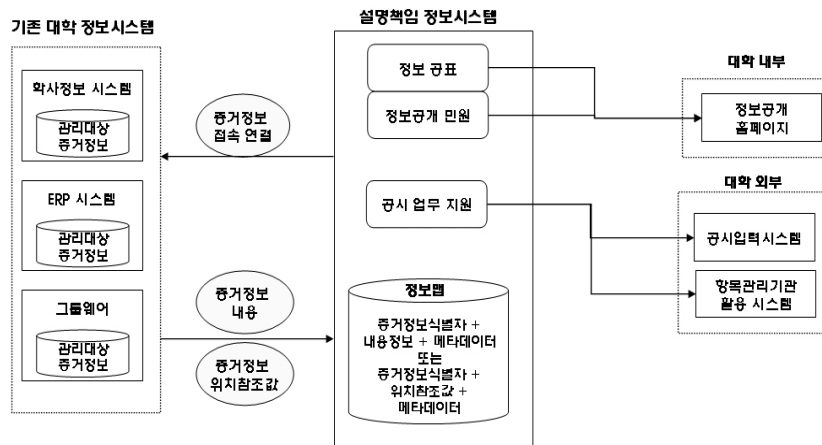
어떤 목적을 위해 판단(Judgment)이 필요할 때는 그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증

거를 수집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이 때 수집된 증거에 대해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⁰⁾ 공공감사기준에서는 증거력을 갖춘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수집한 정보가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목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신뢰성이란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충분성은 목적에 대응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수집된 증거라야 객관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IRMT는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은 증거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 증거정보는 신뢰할 만하고, 진본이어야 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RMT 1999).

대학의 설명책임을 위한 정보도 증거력(We-

ight of evidence)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설명책임 정보가 증거력을 갖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앞에 제시한 정보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가 생산되고 관리되는 각 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결함없이 유지하여 진본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 및 공시 업무를 위한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 모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대학의 설명책임 정보시스템의 기능범위와 요건은 각 대학의 선택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당장 요구되는 정보공개와 공시에 대응하는 기능은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하며, 적극적 정보공개와 공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 공개, 공표, 공시 등의 설명책임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업무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전사적



<그림 5>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 모형

10)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공공감사기준” 참조.

업무정보 중 설명책임에 필요한 증거정보를 선별한 다음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내용을 획득하고,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두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값을 획득하여 맵을 생성한다. 정보맵에는 선별된 증거정보별로 명칭과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하며, 증거정보와 관련한 각종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증거정보를 직접 획득해온 경우는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며,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그대로 관리하는 증거정보의 경우는 접근 경로와 필요한 시스템 권한부여 등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증거정보의 메타데이터에는 공시대상여부, 공표대상여부, 자발적 공개여부, 비공개여부, 개인정보포함 여부 등의 각종 분류 정보도 포함된다. 전사적 증거정보 맵은 끊임없이 현행화되어야 의미있으며, 설명책임관리자가 대학의 설명책임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5. 맺음말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대학들은 설명책임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공시와 이로 인해 촉발될 광범위한 정보공개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대학들이 전사적인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업무와 정보를 설명책임지향설정(accountability-oriented setting)(Rapp 1971)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대학정보공시제와 그로 인한 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업무재설계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

다. 또한 대학이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대학 내의 설명책임 역할과 책임 명시화, 정보공개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대학이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를 수행하고 증거정보로서의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설명책임성을 향상시켜줄 것이며 이것이 대학정보공시제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대학들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증거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정보의 공개기준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례법에 의해 공시하는 항목 이외의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설명책임에 대응하게 된다. 대학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무조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에 반영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대학의 핵심적인 지적 재산이거나 진행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일정 유예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주요 업무별 중요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정보공개를 일정시점까지 유예해야 할 대상을 찾아내 정당한 사유를 적시하여 관리하는 것은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대학은 정보공개와 공시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규제준수나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설명책임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고도화해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중심에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가 가동되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는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했

다. 이 제도가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행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정보공시 자체에 관련한 설명책임성은 대학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인 교과부, 각 항목관리기관들에게도 주어진다. 이들 기관들은 대학들이 증거기반 설명책임성 메커니즘을 잘 갖추어 신뢰도 높은 교육정보를 산출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국에서는 대학에 업무재설계와 증거정보 관리 방법을 컨설팅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대학들이 정보공개와 공시에 대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설명책임성 메커니즘 고도화에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형일. 2007. 대학정보공시제와 새로운 대학평가체제의 구축. 『교육개발』, 34: 5-7.
- 김옥선. 2007. 『대학기록관의 홍보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노은정. 2002. 『대학기록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 5-10.
- 박재운. 2005.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현정. 2008. 고등교육기관 정보공시의 쟁점과 과제. 『교육개발』, 164: 52-55.
- 서혜란. 2005.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방안 모색』.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 발표논문집, 13: 111-129.
- 『세계일보』. 2008. 초중고엔 교육정보 공개하라 고 요구하더니... 정작 대학 홈페이지엔 정보가 없다. 12월 2일 [cited 2009.3.17].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81201004182&subctg1=&subctg2=>>.
- 『인터넷한겨레』. 2008. “우리가 왜?...업무지장” 손사래 ... 정보공개 제도 벌써부터 ‘흔들’, 2월 27일 [cited 2009.3.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2203.html>.
- 임후남. 2008a. 교육정보공시제 시행, 의미와 전망. 『교육개발』, 164: 39-44.
- 임후남. 2008b. 교육정보공시제 발전 체제 구축 방안. 『연구보고』, RR 2008-27: 33.
- 조전혁. 2008. 교육정보공개 필요가 아니라 필수. 『국회보』, 11.
- 최봉섭. 2008. 교육정보공시법제의 내용과 운영 방향. 『교육정책포럼』, 165: 17-21.
- 하미승. 1996. 『행정정보체계론』. 서울: 법문사.
- 한국교육개발원. 20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기록학회. 2008. 『Archives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기록학회.
- 허종렬. 2008. 교육정보공시법제의 내용과 운영 방향. 『교육정책포럼』, 165: 4-7.

- Bearman, David. 1996. "Virtual Archives." ICA Meeting Sep. Beijing.
- Cameron, Wayne. 2004. "Public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equity, ethics."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63: 59-67.
- Frink, Dwight D. and Klimoski, Richard J. 2004. "Advancing accountability theory and practice: Introduction to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special edi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4(1): 1-17.
- IRMT. 1999. "Strategic Planning for Records and Archives Services." MANAGING PUBLIC SECTOR RECORDS: A STUDY PROGRAMME.
- Meijer, A. J. 2003. "Trust This Document! ICTs, Authentic Records and Accountability." *Archival Science*, 3: 275-290.
- Meijer, Albert. 2001.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nd Public Accountability: Beyond an Instrumental Approach." *The Information Society* 17(4): 259-270.
- Nathan Mnjama, J. W. 2007. "E-government and records management: an assessment tool for e-records readiness in government." *Electronic Library*, 25: 274-284.
- Rapp, Marjorie. 1971. Information system for educational management volume 2. data requirements for accountability.
- Romzek, Barbara S. and Dubnick, Melvin J. 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7(3): 227-238.
- Romzek, Barbara S. 2000. "Dynamics of public sector accountability in an era of reform."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66(1): 21-44.
- Schedler, Andreas. 1999. "Civil Society and Political Elections: A Culture of Distrust."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565: 126-141.